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6. 14.(화) 15:00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수 석 전 문 위 원

#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발 의 자: 최경천 의원 등 6인
-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2년 6월 3일
  - O 회부일자: 2022년 6월 3일

#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계발과 자아실현 역량 중진에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O 정의(안 제2조)
- O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 O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O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8조)
- O 실태조사(안 제9조)
- O 기초학력진단검사(안 제10조)
- O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안 제11조)
- O 학부모 교육 등(안 제12조)
- O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및 연수(안 제13조)
- O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안 제14조)

# 5.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 이유

- 기초학력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습득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서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을 의미함1)
- 학교 교육과정에서 특정 시기의 기초학력 미달은 다음 단계 학습 활동과 학업성취를 막는 주요 원인이 되고, 이후 학습에서 지속적 으로 누적됨으로써 학습부진이나 학습지체를 초래하며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학교 교육에 대한 흥미를 잃어 학업중단으로까지 이어 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2016년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개정과 지난해에 9월 「기초학력 보장법」제정을 통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sup>2)</sup>들을 추진하며 노력해 왔음.
-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자료 (표 1)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 이후 더 심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sup>1)</sup> 기초학력보장법 제2조제1항(2021. 9. 24.)

<sup>2)</sup> 학력향상 중점학교 및 학력 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정·지원 사업, 두드림학교 사업, 교육지원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운영 등(2019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2022 기초학력 지원 추진계획. 교육부자료)

[표 1] 2016년~2021년까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구분	1수준(기초학력 미달)							
	중3				고2			
연도	국어	수학	영어	평균	국어	수학	영어	평균
2016	2.0	4.9	4.0	3.6	3.2	5.3	5.1	4.5
2017	2.6 (0.17)	7.1 (0.32)	3.2 (0.22)	4.3	5.0 (0.47)	9.9 (0.70)	4.1 (0.37)	6.3
2018	4.4 (0.26)	11.1 (0.41)	5.3 (0.29)	6.9	3.4 (0.35)	10.4 (0.66)	6.2 (0.51)	6.6
2019	4.1 (0.28)	11.8 (0.44)	3.3 (0.24)	6.4	4.0 (0.40)	9.0 (0.59)	3.6 (0.35)	5.5
2020	<b>6.4</b> (0.4)	<b>13.4</b> (0.59)	<b>7.1</b> (0.43)	8.9	<b>6.8</b> (0.52)	<b>13.5</b> (0.75)	<b>8.6</b> (0.64)	9.6
2021	6.0 (0.33)	11.6 (0.49)	5.9 (0.33)	7.8	7.1 (0.52)	14.2 (0.83)	9.8 (0.62)	10.4

- ※ 1. 2017년 ~2021년은 표집시행으로 인한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괄호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함2. 통계적 유의도는 95% 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
  - 3. \_\_\_\_은 2020년 대비 2021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표시함
-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부 발표 자료 재구조화
  - 현재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는 2017년 이전까지 전수조사 하던 것을 2017년부터 중3, 고2 학생 중 3%만 선정해서 실시하는 표집평가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세부자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기초학력 미달 기준이나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초·중·고 학교 급별로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 실시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조기 발견을 통한 초기 단계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충청북도교육청도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두드림학교' 및 '더 배움학교',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온라인 학습서포터'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한 상태임.

- 이에 도교육청 차원의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 되고 있음.
- 이 같은 측면에서 본 제정 조례안은 충북 도내 학생의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주요내용

- O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도내 특성에 맞는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 개발과 체계적인 추진 계획수립을 통하여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실질 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9조에는 학생의 기초학력 현황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
  - 충북의 기초학력진단과 교육적 지원이 그 근본 취지와 목적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내 기초학력미달 학생 현황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지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안 제9조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은 초· 중·고 학교 급별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초학력진단 검사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적 지원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에서는 다양한 기초학력진단검사 도구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매년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되 학년·학교·지역·도 단위의 평가나 지식위주의 검사방법을 지양하고 교사의 판단에 의해 지필평가·관찰·면담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기초학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된 종합적인 기초학력진단검사 도구 개발과 교사의 판단에 의한 자율적 활용을 활성화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학교 실정과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 됨. 또한 불필요한 서열화나학업경쟁을 완화하는 충북의 기초학력진단검사 체계를 확립・발전시켜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4조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충북의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 및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충북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 환경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도내 학생 모두가 학교 교육에서 소외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 및 그 실효성이 인정되고 제정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 하다 판단됨.